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다수의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들고 있으며,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
해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려 합니다.

한편,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 해촉 사유 규정 가운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미 이러한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든 조례에 대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의 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필요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기획경제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